

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과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1991년 12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적용시한이 만료(1991.12.31)됨에 따른 시한연장임.
- 목적 :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따른 과세와 관련된 국민생활의 안정지원

4. 주요골자

- 부동산 등기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불균일 과세
- 경감율 : 토지와 건축물의 계약서상 금액에서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40경감

4. 검토의견

-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또는교환으로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·군수의 검인을 받은용지에 의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
- 이러한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국민의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시켜 주고 있으나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세과세와 관련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